

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안 번호	319
---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년 11월 8일

발 의 자 : 총무보사위원회
위원장 민태승의원외 3인

I 수정이유

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하게 표현된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.

II 수정주요골자

- “파주시 미술협회”를 공식명칭인 “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”로 함. (안 제5조)
- “사고가 있을때”를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”로 함.(안 제11조)

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중 “파주시 미술협회”를 “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”로 한다.

안 제11조 제2항중 “사고가 있을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	수정이유
제5조(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)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되 <u>파주시 미술협회</u> 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	제5조(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단법인 한국 미술협회 파주지부</u> -----.	불명확한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.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생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</u>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원안과 같음 ②----- -----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</u> -----.	